



의안번호	제72호
회의연월일	2021. 5. 3. (제464회 정기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출부서	경 찰 청 (생활안전국)
제출연월일	2021. 4. 23.

범죄예방협력계장, 범죄예방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안 제24조제2항, 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비업자는 배치신고서에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 영 제10조의2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

**경비원 [] 배치
[] 배치폐지 신고서**

문의의 진단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중 “없음”을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에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접수된 특수경비원 배치신고부터 적용한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배치장소(구체적으로 기재)	(전화번호)		
경비원 배치(폐지) 내용	배치일시	배치폐지(예정)일시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경비원 명단	배치 경비업무	경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배치·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는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만 기재합니다.

<신 설>

장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 영 제10조의2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② (생 략)

③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31